

전주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합30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피고1. B

2. 유한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장충석

변론 종결2023. 3. 22.

판결 선고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7. 24.자 매매계약을 110,636,7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7. 25.자 매매계약을 27,146,7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7. 25.자 매매계약을 120,19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3. 18.자 매매계약을 30,93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마. 별지 목록 제5, 6, 7,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4.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D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2. 22.자 매매계약 및 2019. 3. 5.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288,920,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D에게 별지 목록 제5, 6, 7,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0. 4. 7. 접수 제31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유한회사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1258호, 2019. 3. 7. 접수 제14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과 D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2. 5. 22.경 E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년 이내로, 이자를 연 2%로 정하였다가 이후 2015. 6. 30.경 변제기를 2016. 6. 30.로, 이자를 연 3%로 변경하고, 2016. 6. 30.경 변제기를 2016. 8. 31.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내지 차용금'이라한다).

E의 처 F, 장녀 G, 삼녀 D는 2015. 6. 30.경 E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래 [표1] 기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이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장수군 H	I	D	2016. 3. 23.
2	장수군 J	K	D	2015. 6. 22.
3	장수군 L	M	D	2015. 6. 19.
4	장수군 N	O	D	2016. 1. 4.
5	장수군 P	Q	D	2015. 6. 9.
6	장수군 R	Q	D	2015. 6. 9.
7	장수군 S	O	D	2016. 1. 4.
8	장수군 T	I	D	2016. 2. 17.
9	장수군 U	Q	D	2015. 6. 9.
10	장수군 V	O	D	2016. 1. 4.

1	장수군 H	D	피고 B	2017. 7. 24.
2	장수군 J	D	피고 B	2017. 7. 25.
3	장수군 L	D	피고 B	2017. 7. 25.
4	장수군 N	D	피고 B	2019. 3. 18.
5	장수군 P	D	피고 B	2020. 4. 1.
6	장수군 R	D	피고 B	2020. 4. 1.
7	장수군 S	D	피고 B	2020. 4. 1.
8	장수군 T	D	피고 유한회사 C	2019. 2. 22.
9	장수군 U	D	피고 유한회사 C	2019. 3. 5.
10	장수군 V	D	피고 B	2020. 4. 1.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반대급부로 E는 원고가 지명하는 5인을 E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W의 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이전해두되, 향후 E가 차용금을 변제하면 원고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용금 상환의무와 원고의 학교법인 운영권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E는 2017. 2.경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의사를 전하면서 학교법의 임원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배경으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및 학교법인의 운영권에 관련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와 원고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함이 상당한 관계에 있고 이를 배경으로 E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고소 내용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서가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합의 내용에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D가 책임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D가 그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애초에 D의 소유 내지 책임재산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 13 내지 18,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 내지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 B이고, 피고 B가 D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각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D로 기재함으로써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이는 3자간 명의신탁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약 2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5, 6, 8, 9항에 관하여는 피고 B 개인 또는 피고 B가 대표인 유한회사 X, 피고 유한회사 C 등을 사업주체로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 되었고, 제7항에 관하여는 피고 B를 사업주체로 하는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허가 되었으며, 제4항의 지상에는 피고 B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중 아래 [표3]의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담보대출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 외에는 모두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D 명의의 위 담보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이전될 무렵 D 명의 계좌에서 상환된 다음 곧바로 그 상환액 상당의 돈이 피고들 내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X 등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8항 부동산	I	○ 제1항 부동산: 매매대금 3,000만 원. B 명의 계좌에서 3,000만 원 송금 ○ 제8항 부동산: 매매대금 1,650만 원, 현금 지급	을 17, 을18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K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K 명의 근저당권부채무 인수 및 B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 송금	을15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1) 등록전환 전 'Y'	M	매매대금 3,000만 원. B 명의 계좌에서 3,200만 원 송금	을14
별지 목록 기재 제4, 7, 10항 부동산2) O와 D 사이의 매매계약서(을 제16호증)에는 매매 목적 부동산으로 'N'와 'Z'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6. 1. 4.이고, 분할 전 'N'는 2010. 10. 19. 'N' 및 'Z'로 각 분할되었다가, 'N'는 2016. 9. 2. 'V' 및 'S'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Z'는 2019. 3. 8. 'Z', 'AA'로 분할되었다가, 'Z'가 2020. 6. 24. 다시 'N'와 합병되었다.	O	매매대금 4,370만 원. 현금 1,000만 원 및 D 명의로 받은 대출금 3,370만 원 지급.	을16
별지 목록 기재 제5, 6, 9항 부동산	Q	매매대금 6,000만 원. B 명의 계좌에서 6,000만 원 송금	을13

다) 위와 같이 피고 B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다만 담보대출의 편익 등을 위해 사립학교 교사인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허가를 받고 그 사업주체와 부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질적 매수인이 자신이라는 사정을 숨기지 않았고, 2010. 3.경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D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G계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계약의 체결과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I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생 D에게 명의신탁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해진 책임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주장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춘순

판사신서영

판사박정언

별지

1) 등록전환 전 'Y'

2) O와 D 사이의 매매계약서(을 제16호증)에는 매매 목적 부동산으로 'N'와 'Z'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6. 1. 4.이고, 분할 전 'N'는 2010. 10. 19. 'N' 및 'Z'로 각 분할되었다가, 'N'는 2016. 9. 2. 'V' 및 'S'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Z'는 2019. 3. 8. 'Z', 'AA'로

분할되었다가, 'Z'가 2020. 6. 24. 다시 'N'와 합병되었다.